

원산지표시 위반사례



☑ 손상·변경표시

- 적정하게 표시한 원산지를 손상·제거하거나 종전의 표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행위
- 수입산 맨홀뚜껑에 스프레이라카로 덧칠하여 원산지표시를 일부 손상



☑ 부적정표시

- 원산지의 표시위치, 표시의 견고성, 활자의 크기·색상 등을 부적정하게 하여 구매자가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
- 수입산 합판 현품에 원산지 표시가 지워지거나, 흐릿한 상태로 표시



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신고

- 전화 국번없이 125(이리로)
- 관세청 홈페이지 통한 신고
- 관세청 홈페이지 → 국민 참여 → 신고마당 → 원산지 표시 위반신고



수입물품 원산지표시제도 및 위반사례

(국내생산물품 포함)

기타 안내사항

☑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

- 대외무역법, 같은 법 시행령, 대외무역관리규정
-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
-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

☑ 원산지표시제도 관련 민원안내

-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 ☎ 042-481-7885
 - 국번없이 125(이리로)
 - 본청 및 본부세관 원산지표시 담당부서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관세청(총괄) 042-481-7897 | 서울본부세관 02-510-1536 |
| 인천본부세관 032-452-3359 | 부산본부세관 051-620-6343 |
| 대구본부세관 053-230-5362 | 광주본부세관 062-975-8171 |



원산지표시제도 안내



원산지란?

- 수입물품이 생산·제조된 국가를 말함
 -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, “실질적 변형(HS6단위 변경)”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(단, 단순가공 수행국은 원산지로 불인정)

원산지표시대상품품
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표한 물품
 - ※ 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별표 8에 계기된 수입 물품

원산지표시방법(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)

- 해당 물품(현품)에 표시
- 한글·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
-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
-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
-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
 - [예외] 현품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소포장에 표시 또는 생략이 가능

원산지표시 일반원칙(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)

- “원산지:국명” 또는 “국명 산(産)”, “국명 제(製)”
- “Made in 국명” 또는 “Product of 국명”
- “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, 주소, 국명”
- “Country of Origin : 국명”
-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

원산지표시 위반시 제재조치

- 행정제재 : 시정명령, 과징금(최대 3억원), 과태료(최대 1천만원)
- 형사처벌 : 징역(최대 5년), 벌금(최대 1억원)

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표시



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이란?

-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

국내생산물품에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 (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)



- 수입원료와 완제품의 HS 6단위가 다를 경우, 제조 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(CIF)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
 - 수입원료와 완제품의 HS 6단위가 같을 경우,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서 수입원료의 수입가격(CIF)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
 - ※ 아래의 경우 제외
- 국내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물품
 - 관세율표 1~24류(농수산물·식품), 30류(의료용품), 33류(향료·화장품), 48류(지와 판지), 49류(서적·신문·인쇄물), 50~58류(섬유), 70류(유리), 72류(철강), 87류(8701~8708의 일반차량), 89류(선박)의 물품



원산지표시 위반사례

거짓표시

-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(지역명 포함)으로 원산지표시
 - 수입산 대계를 국산으로 거짓표시
 - 한국산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국내생산물품(냄비)에 한국산 (MADE IN KOREA)으로 거짓표시



오인표시

- 현품·포장에 표시된 언어, 문자, 상표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
 - 원산지가 중국산인 의류의 목부분 라벨에 상표와 함께 'FRANCE PARIS'로 표시



미표시

-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
 -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포장 박스에만 원산지 표시

